

제391회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9월1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국토교통부 소관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17)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99)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2)
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7)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23)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2)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71)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16)
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3)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7)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3)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35)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4)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0)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9)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6)
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38)
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5)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8)
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6)
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93)
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68)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4)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3)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7)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9)
32.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376)
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6)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2)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4)
3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54)
3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08)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0)
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6)
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1)
4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9)
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91)
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9)
4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12)
4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9)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90)
4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0)
4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29)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9)
5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6)
5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6)
5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9)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77)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16)
5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3)
5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5)
5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8)
5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8)
5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91)
6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7)
6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32)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22)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4)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5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5
- 간사 및 소위원장(송석준) 인사 5
3.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5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5

가. 국토교통부 소관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7)	9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9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2)	9
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7)	9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3)	9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2)	9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1)	9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6)	9
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3)	9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7)	9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3)	9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5)	9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4)	9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0)	10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9)	10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6)	10
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8)	10
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5)	10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4)	10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8)	10
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6)	10
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3)	10
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8)	10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	10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3)	10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7)	10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9)	10
32.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6)	10
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6)	10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2)	10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4)	10
3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4)	10
3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8)	10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0)	10
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6)	10
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1)	10
4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9)	10
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1)	10
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9)	10
4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2)	10
4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	10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0)	10
4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0)	10
4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9)	10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9)	10
5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6)	10
5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6)	10
5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9)	10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7)	10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6)	10
5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3)	10
5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10
5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10
5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8)	10
5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1)	10
6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7)	10
6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2)	11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2)	11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4)	1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李憲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19대 국회 초선 의원 시절부터 줄곧 국토교통위원으로 10년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제가 국토 분야 법안 심사소위원장으로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간사 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낙후 지역의 상생 성장 등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의정활동에서 쌓인 소중한 인연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도시, 도로와 철도, 항공 등 분야를 관장하고 있고 서민의 주거 안정,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 마련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

난해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 올해 광주 동구의 건축물 붕괴사고 등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시설물 등의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주춧돌이 쪼르면 우산을 준비한다는 초운장산의 경구와 같이 보다 완벽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당의 조용천 간사님, 야당의 송석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생활,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좋은 지혜와 식견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는 여야 구분 없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무한불성의 자세로 국토교통위원장의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등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 시작 전에 우리 회의장의 소독, 환기를 실시하는 등 국회 내의 방역 4단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년 반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진선미

위원님께서 오늘 자로 사임을 하시고 황희 위원님께서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한 후에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다음에 5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송석준 위원님을 간사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관례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송석준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 및 소위원장(송석준) 인사

○위원장 **李憲昇** 송석준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간사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되신 송석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과 조웅천 간사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선후배님들 모시고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송석준 위원입니다. 또 교통법안소위원장을 맡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로서 국토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권익위에서 우리 당 12명의 부동산 투

기 의혹 의원들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입니다. 특히 동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놀라셨을 텐데요.

그 내용은 제 고향에 60년이 다 된 고향집 대수선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그 과정에서 본채와 옆의 헛간—옛날의 부속 건물이지요—그게 흙 건물인데 그것을 좀 헐고 패널로 한 13평 되던 것을 한 10평으로 줄여서 패널로 다시 이렇게 개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미흡한 부분은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건물 개·보수 자체를 이런 투기 의혹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소명해주셨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져서 현재 보완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께 일부 제가, 제 일은 아니지만 어머님 소유의 어머님의 비용으로 그렇게 하던 대수선이 결과적으로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위반 소지가 없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해서 모범 국토 상임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10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박성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35건의 시정·주의·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47건, 주의 32건 및 제도개선 41건 등 총 114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정책연구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중간점검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며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 후 개선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추정 편성 원칙을 준수하고 자치단체와 허가 절차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주택리츠출자사업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신규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금포기각서를 받고 선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7

건, 제도개선 6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에 대한 실투자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시정 2건, 주의 4건, 제도개선 1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박성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李憲昇 결산 관련입니까?

○송언석 위원 결산 심사 전에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 오늘 결산을 여기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의결하는 이 시간까지도 아직 본 위원한테 자료가 안 왔거든요.

○위원장 李憲昇 말씀하시지요.

○송언석 위원 장관님, 주택토지실장 나와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도시기금에 주택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또 이번 결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할 뿐 잡힐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이 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열두 가지라고,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열두 가지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계부채 규모와 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나.

두 번째,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상승률과

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세 번째,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무엇이나.

네 번째, 통화량과 주택가격의 영향은 어떻게 상호 미친다고 보고 있느냐.

다섯 번째, LTV·DTI 규제정책 시점 전후의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무엇이나. 특히 규제지역 확대 강화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은데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재건축 입주권 2년 실거주 요건 법제화 방침 취소 이후에 강남 은마아파트 등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에 전세물량이 늘어났던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일곱 번째, 신규 입주물량이 많았던 과천·분당, 특히 대구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을 보이는데, 결국은 공급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덟 번째, 민간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여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아홉 번째, 문 정부에서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열 번째,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받은 물량이 준공되어 이번 정부 초반에 신규 주택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신규 인허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택공급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무엇인가.

열한 번째, 주택 평균 매매가격 등 호당 주택단가가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열두 번째, 지역별·분위별 주택가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데 대한 정부의 분석과 판단은 무엇인가.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정부의 보고서 혹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 줄 것이라고 해서 서류로 해서 국토부에 자료 요구를 했고 지난 전체회의 때 장관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늘 지금 결산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장관님, 이 자료 언제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전체가 다 안 되면 우선 된 것부터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 위원님, 양해 가능합니까?

○송언석 위원 예.

○위원장 **李憲昇** 장관님, 그러면 자료 제때 좀 하셔서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제 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장관님,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하영제 위원 제가 우리 당의 수해특별위원장으로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8월 초 섬진강 수계 홍수 기억하십니까? 하동 위에 구례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하영제 위원 그때 참 근래에 보기 드문 홍수를 겪었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예산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위에서,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산하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있겠지요.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슨 알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예산을 이렇게 우리 국회에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서 당초 예산에다가 추경까지 또 확보해 줬더니 아직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알력이 혹시 있습니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아니,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약관계, 행정절차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일반적 으로 생각하기로 전자시스템 아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하영제 위원 대규모 토목공사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늦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려보냈는데 무슨 이유가 있길

래 물어보면 대답이 다 서로 다른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1차관님이나 2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수해 예방을 위해서 추경 편성 전인 작년 6월부터 시군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단축해서 적기에 우리가 준공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독려를 했는데요. 시군구에서 자기들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영제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전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예.

○**하영제 위원** 토목공사도 아닌데. 토목공사는 예컨대 설계하고 업자 또 서로서로 낙찰받고 입찰 등등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위원님, 그런데 정부 규정상 민간업체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찰이나 행정절차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영제 위원** 그러면 다소 구체적으로 섬진강은 어떻습니까? 섬진강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는, 여기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예, 섬진강도 저희들이 작년에 최대한 독려를 했지만 섬진강 쪽에 많이……

○**하영제 위원** 작년 8월 초에 그렇게 큰 홍수 난리를 쳐 놓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예, 맞습니다.

○**하영제 위원** 전북 구례에서부터 하동까지 굉장했었잖아요. 지금 그쪽의 주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해 있어요. 보고서도 보니까 그냥 달관적입니다. 넘겨서 봤더니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찾았어요, 내가 다시 자세히 안 봤는지 몰라도.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는가? 작년에 홍수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홍수 난 바로, 홍수 끝나고 9월 달부터 올해…… 밑에 지방은 별로 열지를 않습니다. 토목공사는 부지런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홍수가 나기, 적어도 아무리 늦

어도 7, 8월 달에는 끝내 줘야 돼요. 그런 토목공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냥 전자로 하는 시스템 같은데 이게 이렇게 늦을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차원에서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했고 아마 7월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한 70%까지는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영제 위원**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절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예, 맞습니다.

○**하영제 위원** 추경예산의 본질을 자꾸 위반하시네, 그러면. 좀 확실히 챙기서 가지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예,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영제 위원** 특히 대규모 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걱정을 좀 하루빨리 덜어 줄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김은혜 위원**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하나요?

○**위원장 李憲昇** 자료 요구요? 결산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심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나오셔서 가지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박무익**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7)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2)

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7)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3)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2)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1)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6)

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3)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7)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3)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5)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4)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0)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9)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6)
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8)
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5)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8)
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6)
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3)
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8)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4)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3)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7)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9)
32.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6)
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6)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2)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4)
3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4)
3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8)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0)
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6)
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1)
4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9)
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1)
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9)
4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2)
4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0)
4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0)
4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9)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9)
5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6)
5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6)
5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9)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7)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16)
5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3)
5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5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5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8)
5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91)
6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7)

6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2)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2)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4)

(10시27분)

○위원장 **李憲昇**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3항까지 총 5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금년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은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 등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 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방화스크린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도 방화스크린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이에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안은 지난 화재로 사망하신 김동식 구조대장 빈소에서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특히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요청한 법안으로서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기관과 부처와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41항까지 3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지고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분야 법률안 3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대응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속·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포괄적 위임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해체계획서를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송석준 의원님 안은 물류창고시설 등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화재안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은 시행령 등에 위임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하자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정의 당사자에 하수

급인 외에 수급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 관련 종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 등을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금지 위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이주자택지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토보상을 이용한 투기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사업 및 증축형 리모델링의 사업성 검토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지역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의 수사 등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정비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관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 및 정보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 대상 및 행위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동시에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도록 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존 공업지역을 먼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신규 공업지역과 기존 공업지역 사이의 대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을 불법 전매한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매수자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전매행위 제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은 매수행위 역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李憲昇**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63항까지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지고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1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 문정복 의원안은 교통수단 등의 정의 규정에 궤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궤도사업자들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동편의시설 및 편의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궤도시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궤도의 유형이 다양하고 궤도사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오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 및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제한단속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보수를 법령으로 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운행제한단속원 보수만을 법령으로 규정하면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임금기준 마련 논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 김승원 의원안, 오영훈 의원안, 홍문표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운송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 또는 강력범

죄자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에 해당되는 운송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동법 제정 당시에도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연혁과 제정법률의 시행일을 고려할 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종사제한 규정 도입에 관해서는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이 자유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박상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의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항공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슬롯이나 운수권과 같이 노선의 휴지기간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은혜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장관님, 지난 회의 때 제가 이호승 실장 발언을 말씀을 드린 것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홍보한다 그 이전에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자화자찬을 해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발언이기 때문에 국토부라도 주택 보급에 대한 제대로 된 실상을 알려 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오늘 다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서울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매해 초에 밝힌 입주 예상 물량과 실제 입주된 물량을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2021년 하반기 입주 예상 물량은 저희가 받았

으니까 2021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물량 안에 청년 오피스텔이라든지 임대주택 그 세부 분류사항을 포함해서 전해 주십시오.

저희가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또 제대로 된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는 게 필요하지요. 따라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하면서 복지지원법상 요건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10년 후에 이자납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형에게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형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서민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소형과 굳이 분류해서 이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제7조 2항의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주시고요.

7조 2항이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이거 시행령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에게 제시한 선이주 후철거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고요.

3기 신도시 사업지구 안의 창고주들에게 기업 이전 대책과 동일한 수준의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이미 서류로 부탁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 외에 지난 국감 때 변호관 고시 개정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반사식 필름번호판 성능 미달과 관련해서 조치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10년 공공임대,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드렸던 나머지 4개 항에 대한 답변까지 장관님 바쁘시더라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또 자료 요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진성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장관님, 신동근 위원입니다.

현행법상 공시지가·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가 독립기구가 아니고 국토부 산하로 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뭐니까?

이게 말하자면 국토부 산하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2개 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격상을 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올리자라는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이것을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알아서 결정하게 하자,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부동산 말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판매가와 공시가격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보면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그 가격은 일치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딱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경과가 됐거나 팔린 당시는 거래가를 알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예컨대 물가상승률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게 국가경제 지표의 정확성이나 또는 자산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그런 어떤 공정경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신동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쨌든 간에 아파트하고 땅 현실화율이 낮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토지나 이런 것은 아직도 현실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서, 이것은 비단 문제인 정부뿐만 아니고 과거 정부에도 죽 했던 거지요. 현실화율을 로드맵을 가지고 서서히 올리겠다는 거지요. 아마 30년까지 거의 90%까지 올리나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신동근 위원 그러면 봅시다.

권영세 의원께서는 이것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전문적·기술적 업무이지 다양한 부처가 모여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부처 간의 협업보다는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첫 번째는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심의사항을, 말하자면 전문적·중립적·기술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고 정무적 또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왜냐하면 여기는 보니까 각 정당에서도 심의위원들을 추천하자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을 만드는 이것을 완전히 정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통계와 정책의 영역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통계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통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이냐는 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견 수렴이,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조직 관리지침에도 보니까 이게 어떤 한 부서에 특정하게 소관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그 부처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전문성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한무경 의원께서는 말하자면 이것을 지자체로 그냥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최근에 공시지가 현실화율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많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될 사안이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판단할 사안입니까?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연방정부다 보니까 주 단위의 감정평가위원

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 시도마다 다 판단이 달라 버리면 이게 주관적으로, 특히 지자체장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데 그 선출되는 지자체장이 말하자면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정무적 판단, 주관적 판단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공시가격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도 되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이라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어야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근 위원 다시 말해서 물가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국 단위 정책이지 지자체 위임사무가 아니다 이런 판단도 있고.

또 저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들이 많다면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시기를 좀 조정하거나…… 저는 이게 현실화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정경제를 위해서.

그러나 이게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부동산 요율을 손을 보는 게 나은 거지 이걸 흔드는 식으로 또는 위임사무를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신동근 위원님과 유사한 취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업무 중에 표준지지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고 개별 토지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고시의 주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또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주택의 경우는 국토부가 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은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진성준 위원 또 공동주택은—주로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인데—이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진성준 위원 저는 현행의 공시가격 업무체계가 우리의 특수성과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나 또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움직여서는 곤란하다.

물론 공시가격이 어떠한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의료보험료를 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통일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이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아파트의 경우나 이런 것은 통일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격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자거나 또는 시군구에 옮기자라고 하는 의견은 조금 단견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맞다고 봅니다.

○진성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의 현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상태이고 이걸 재지정해 달라고 하는 중고차 업계의 요청이 있지만 이 해제된 상황을 틈타서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오랫동안 갈등을 계속해 왔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에 동반 상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석 달에 걸쳐서 여섯 차례의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진전은 있어요. 완성차 업계가 시장에 진출하는 데 그 범위를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자 해서 한 삼사 년에 걸쳐서

10%까지 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쟁점에는 합의를 했지만 그다음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소관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만 자동차 시장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좀 안정되고 또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격렬한 갈등과 저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양측의 중재와 타협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그만큼 기존 업자들의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고차 업체는 그만큼 신차판매권을 허용해 달라라고 완성차 업체에 요청하고 있는 데 반해서 완성차 업체는 그것은 자기의 판매망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 정부의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하고 또 둘 사이에 상생할 수 있는 무슨 타협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 둘 사이의 중재와 타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막판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말씀대로 상생하는, 동반 성장하는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국회의 논의, 부처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직접 양 당사자들도 좀 만나서 절충점들을 찾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李憲昇**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따로 질의 순서가 없고 먼저 거수하시는 순서대로 하는데 박상혁 위원님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재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먼저 이현승 위원장님,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李憲昇** 고맙습니다.

○**박상혁 위원** 장관님, 제가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4건의 남북한 항공·철도 교류사업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난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간에 항공 및 철도 교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SOC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 시장에 대해 선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별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통일부 같은 경우는 주도권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이런 상호교류를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자 이런,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부도 역시 좀 신중하자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장관님께서 이 4건의 개정안에 대한 통일부나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의원님의 입법 발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통일부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자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건이 좀 호전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기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특히 통일부하고 외교부의 이런 입장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함

니다.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통일부에서 주도하고 거기에 법률이 있다는 것과 개별 법률에 철도·항공 등에 대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문제가 절대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통일부가 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난 2020년 우리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사실 국토부가 주도해서 북한의 철도 사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던 바 있고 거기에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철도공사나 철도공단이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가 통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과 입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급진전할 때가 있지만 또 후퇴하기도 하고 이게 남북관계의 특성인데 항상 급진전하면 하겠다라기보다도…… 지금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나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러한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국토부의 입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야 이후 언젠가 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할 때 훨씬 더 탄탄한 토대 위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을 심사할 때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제가 또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회계 문제를 투명화하자, 회계감사 감리를 하고 인터넷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공개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지만 지금도 가장 많은 분쟁이 관리비라든지 회계 문제와 관련된 분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법안을 심사할 때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화하자는 취지, 더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취지의 법안인 만큼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처에서도 법안 심사 시에 그

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정부 측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선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동안 우리가 소수당이고 또 수가 적어서, 위원장님까지 다수당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가 좀 죽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님, 어쨌든 그동안 당했던 것, 우리 야당 위원들 편 좀 많이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차피 다수당은 표결하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야당 위원들 발언이라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李憲昇** 공정하게 잘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일단 마음은 든든합니다.

장관님, 소병훈 의원님하고 문정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를 도시재생사업에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박성민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쇠퇴한 기존 도심이나 원도심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2013년부터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또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또 실집행률도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문제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또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차제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비용을 좀 더 손을 봐야 된다. 특히 이제 기반시설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을 하려면,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땅은 지자체에서 사고 주차장 올리거나 자갈 깔고, 경비는 이제 정부에서 대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허울 좋은 도시재생사업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노후 도시라든지 좀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규정 자체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그동안 해 온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 시즌 2 형식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추진 방식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박성민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다가 5년간 50조를 투입한다고 거창한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는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패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오래된 원도심, 울산 중구 원도심의 단체장을 8년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주민협의체, 상인협의체, 주민 동의부터 구해 내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해서 민간투자는 물론이고 사실은 기부운동까지도 함께 공동으로 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 현장을 감안한 이런 정책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중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32항의 법률안은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58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언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위원장李憲昇 아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송언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 감독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위원장李憲昇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실시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31번.

○위원장李憲昇 잠깐만요. 그 안은 여야 간사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위에 회부하되 소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또 간사들간에 협의를 해야 안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양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법률안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박영순·정동만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재 위원 장관님,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하고 임차인,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양가격에 대한 분쟁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의 하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 전환될 때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분양가격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기관에 대해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을 대변하고 임대인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중 한 아파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마는—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부실시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수가 안 된 상태로 분양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감정평가 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원론적으로 방향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민식이법이 마련됐고 거기에 따라서—아마 2021년 1월 인가요—정부에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주변을 그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학생들, 어린이들의 등교나 하교, 그 통행 시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법 시행은 어린이들이 전혀 없는 새벽이라든지 한밤중에도 시속 30km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김희재 위원 과연 그게 합리적인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있는 그 시간대에만 제한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온종일 30km로 제한을 해서 도시의 교통 흐름 자체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실제로 도심 내에 3050 속도제한을 실시하고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원활한 교통 소통의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제기하신 사항을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위원 법의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법의 취지하고 정부의 지침 자체가 너무 과잉되게 조치를 취해서 사실상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이현승 위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감사합니다.

○박영순 위원 저희 여당 위원들께도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장관님, 최근에 금융 당국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최근에 보니까 NH농협은행은 집담대출 포함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고 아마 우리은행이라든가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많은 부동산…… 어쨌든 집값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도 있겠지만 반면에 서민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른다는가 또는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데 대한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걱정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반드시 꼭 필요한 실수요 자금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최근에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폭으로 올랐고 금융건전성이나 가계의 건전성도 걱정이 되지만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별로 연도별 총량의 목표를 정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에 그 한도를 초과해 버려서 중단하는 조치를 했던 것 같고요. 다른 금융기관들의 상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건전한 대출 관행이나 가계의 경제를 생각하면 대출 규제는 총량적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반드시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

가지 않게 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영순 위원 정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직방 관련한 부동산 업계의 우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박영순 위원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장을 제공하는 사람이 직접 운동선수로 뛰는 그런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동산업계에서 플랫폼 독과점이라든가 공정경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게 있고요.

물론 플랫폼 업자는 장롱 속에 있는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업자들을 직접 창업으로 참여를 시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같이 수수료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참여시켜서 부동산중개업자들과 50 대 50으로 수수료를 분할하고 또 특별한 인센티브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중개업자들과 불공평한 경쟁이 되고 또 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국토부 부동산과에 질의를 하니가 현행 법안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과 불공정한 문제를 충분히 잘 살펴보고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직방이나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 인하라든지 서비스의 다양화라든지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떻게 막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기존에 중개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타다 사태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박영순 위원 그런 과정을 좀 충실하게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문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박영순 위원 해고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긴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박영순 위원 국토교통부가 마냥 법에만 맡겨 이 정도까지 왔는데 지노위, 중노위 그다음에 행정법원까지 다 해고자들이 승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그냥 계속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또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법에만 맡겨 둘 일은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그 사안은 지금 서울 노동청에서 중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상황 지켜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정동만 위원 장관님, 생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안과 현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정동만 위원 중복되는 개정 법안에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지……

잠깐 질문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만 위원 물류취약지역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해서 법안이 올라왔는데, 결국 가격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정동만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와 물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취약지역 소비자 비용을 비취약 지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택배요금을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다른 재정 지원 일반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개정안 지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장관님, 지금 비대면 시대에 추석도 다가오는데 택배 물량 증가하지요. 그렇지요? 또 택배기사님들 사고도 많고 해서 문제시되고 또 소비자들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언택트 비대면 때문에 물량이 늘고 종사하시는 분들 근로 환경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회적인 합의로 이끌어 낸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련된 택배업계를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택배 물량의 안정적인 배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제가 택배사 고객 불만 접수 현황을 국토부에 보유·관리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지금 그 불만 사항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아마 그것은 소비자들이 해당 택배회사에, 또 택배사도 서로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을 외면하고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회사별로 되어 있을 텐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살펴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 어떤 불편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불만과 또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李憲昇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원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李憲昇 고맙습니다, 홍 위원님.

○홍기원 위원 저는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일정 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과 시세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예.

○홍기원 위원 이렇게 공시가격하고 시세가 큰 차이가 나면 과세 형평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인, 예를 들면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서 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결국은 보험 가입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차관님께 아마 질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실적이 없는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통상 시세보다 큰 차이가 나잖아요?

차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주변 인근에 크게 거래가 안 됐든지 그리고 당해 단지 내에서 거래가 많이 안 됐던 그런 아파트 같으면 시세가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를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시세를 그냥 그대로 100%는 못 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현실화율이 낮은 수밖에 없고요.

○홍기원 위원 그래서 현실화율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특히 이번 사례 같이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발하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지금은 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현실화율에 차이가 크니까 보증보험도 문제지만 과세형평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실화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예, 위원님 그 방향이 맞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래실적이 별로 없는 단지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건 현황 파악이라도 해 보고 그게 실거래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면 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거래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공시가를 매기려다 보니, 규정상으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인정되는 가격, 적정 가격과 최대한 가깝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가격을 높게 하면 민원이 생길까 제 생각으로는 대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걸 특별 관리를 해서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또는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갑자기 올려 버리면 이게 조세 부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건강보험료나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적정 수준 정도를 매년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어느 적절한 균형을 찾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일반적인 공시가격 문제도 제가 알지만 이렇게 거래실적이 없는, 특히 지방의 경우에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 그리고 박영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기관장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장관·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강 준 현	김 교 홍	김 상 훈	김 윤 덕
김 은 혜	김 희 국	김 회 재	문 정 복
문 진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영 순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신 동 근
이 중 배	이 헌 승	정 동 만	조 오 섭
조 웅 천	진 성 준	천 준 호	하 영 제
허 영	홍 기 원		

○청가 위원(3인)

심 상 정 장 경 태 황 회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 시 역
전 문 위 원	이 지 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	관	노	형	욱
제 1 차 관		윤	성	원
제 2 차 관		황	성	규
기 획 조 정 실 장		하	동	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백	승	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박	무	익
새 만 금 개 발 청 장		양	충	모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정정순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당선 무효	2021. 8. 28.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진선미	황희	더불어민주당	2021. 9. 1.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송언석	경상북도 김천시	국민의힘	2021. 8. 27.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2021. 8. 28.

○의안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8. 25. 윤준병 · 양이원영 · 강선우 · 오영환 · 안호영 · 김성주 · 이원택 · 강득구 · 최종윤 · 양정숙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5. 이해식 · 김영배 · 김원이 · 김홍걸 · 서영석 · 오영환 · 위성곤 · 이학영 · 정일영 · 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6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1. 8. 26. 박영순 · 장철민 · 황운하 · 윤재갑 · 조승래 · 남인순 · 조오섭 · 김한정 · 김주영 · 설훈 의원 발의)

8월 27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8. 27. 강병원 · 신동근 · 윤준병 · 김윤덕 · 전혜숙 · 유동수 · 김남국 · 강선우 · 김주영 · 윤관석 · 위성곤 · 윤건영 · 김승원 의원 발의)

8월 30일 회부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서영교 · 오영환 · 민병덕 · 김교홍 · 김영호 · 김정호 · 이해식 · 장철민 · 이동주 · 한병도 · 김영배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서영교 · 김교홍 · 김영배 · 김영호 · 김정호 · 민병덕 · 오영환 · 이동주 · 이해식 · 장철민 · 한병도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김성환 · 강득구 · 강훈식 · 김남국 · 김성주 · 김정호 · 민형배 · 신영대 · 신정훈 · 안호영 · 양이원영 · 위성곤 · 윤건영 · 윤준병 · 이소영 · 이용빈 · 이원택 · 이해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31일 회부됨